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727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 위탁<br>근거 마련 ..... | 3 |



## I. 개요

### 1.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727호)

####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2. 11.

(3) 회 부 일 : 2026. 2. 12.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호사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간호조무사의 경우에도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의 위탁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령에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 방식은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맡고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보건 의료 직역 중 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율은 202

4년 말 기준 12%에 불과한 상황으로, 신고 수리 위탁기관의 불명확성이 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 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신설 등).

## II. 주요 내용별 검토

### 1. 간호조무사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간호조무사가 자격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때 그 방법,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그 신고의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br>① ~ ③ (생략)<br>④ 간호조무사는 <u>보건복지부령</u>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br><u>&lt;신설&gt;</u> |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 <u>대통령령</u> -----<br>-----<br>-----<br>-----<br>-----<br>⑤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u> |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7조<sup>1)</sup>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각각 최초로 면

1)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sup>2)</sup>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간호사의 경우 매년 약 7~10만명이 신고를 하였고, 간호조무사의 경우 매년 약 2~7만명이 신고를 하였음.

#### < 최근 5년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신고현황 >

(단위 : 명)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간호사   | 88,609 | 69,998 | 90,044 | 109,782 | 11,578* |
| 간호조무사 | 59,597 | 17,004 | 70,494 | 43,544  | 31,699  |

\* '25.6.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

- 한편, 현행법은 간호사의 경우 자격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에 대해서 그 수리 업무를 간호사중앙회에 위탁<sup>3)</sup>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한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당초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년 전에는 그 자격에 관한 업무를 시·도지사의 소관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간호법」 제40조(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이 제1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3)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로 정하고 별도의 신고 의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간호사<sup>4)</sup>와 달리 협회에 대한 신고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2017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으로 변경되고 신고 의무가 마련<sup>5)</sup>된 이후에도 법률에 수리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채 2024년 「간호법」 제정 시 그대로 이관되었음.

#### □ 따라서 현행법 제45조의 일반적 위임·위탁 규정 및 그 시행령<sup>6)</sup>에

- 4) 구 「의료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구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신고) ②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 5) 2015년 12월 다음과 같이 「의료법」 제80조가 개정되고 2017년 1월 해당 조문이 시행되었음.

| 의료법 [법률 제13605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의료법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
|-----------------------------------------------------------------------------------------------------------------------------------------------------------------|----------------------------------------------------------------------------------------------------------------------------------------------------------------------------------------------------------------------------------------------------------------------------------------------|
| <b>제80조(간호조무사)</b> ①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u>자격인정</u>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br><br><신 설><br>②·③ (생략)<br><신 설><br><br><신 설> | <b>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b>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u>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u>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br><br>1. ~ 6. (생략)<br>②·③ (생략)<br>④ <u>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br>⑤ (생략) |

- 6) 「간호법」 제4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간호법 시행령」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 및 지정서(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지정서를 말한다) 발급 업무
  -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
  -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실태 및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 간호조무사협회

따라 간호조무사의 신고 접수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sup>7)</sup>나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간호조무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3년마다 공모를 실시하여 간호조무사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설명<sup>8)</sup>임.

- 이에 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신고에 대한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불필요한 공모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로도모함과 동시에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간호조무사의 신고 방법, 절차 등을 간호사와 같이<sup>9)</sup>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7) 「간호법」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8)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마다 총 4차례(2017, 2020, 2023, 2026년) 공모를 실시한 결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다른 간호조무사협회 총 2개 협회가 참여한 2017년을 제외하고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만이 공모에 참여하였고 모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간호법」 제2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뿐이라는 설명임.

참고로, 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자격 및 취업상황 신고 관련 위탁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정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수탁자 자체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한다는 설명임.

9) 「간호법」 제17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 보건복지부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료법」 개정(법률 제13658호, 2016.12.29. 공포, 2017.1.1. 시행)으로 자격인정권자가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되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자격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따라서, '17년부터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제3항(「간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공모(3년 주기)하여 선정하였으며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수행 중임(2017~현재). 간호사 면허실태 및 취업상황 등은 현재 「간호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별도 공모절차 없이 대한간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간호조무사 자격실태 및 취업상황 등은 사실상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무로만 규정되어 있어 3년 주기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신고율 향상을 통한 간호조무사 자격체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법 취지에 공감함.

###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업무의 수행 주체가 하위법령에 의존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과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제도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는 합리적 입법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적극 찬성함.

□ 대한간호사협회

- 간호조무사 단체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은 의료인 중양회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 상으로도 관련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어 개정실익이 미미함. 개정안은 간호사중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두 단체 간의 갈등만 심화시키므로 반대함.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신고제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본 개정안에 대해 찬성함.

|              |
|--------------|
| 문 의 처        |
| 02)6788-5494 |